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35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박균택 · 박지원 · 양부남
김기표 · 이건태 · 황운하
박해철 · 박홍배 · 위성곤
박 정 · 황명선 · 권칠승
김주영 · 박상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형기종료자 등)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재수단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보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실무상으로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 및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

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개정, 제38조의2 신설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피부착자”를 각각 “피부착명령자”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와 전자장치 부착”으로 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와 전자장치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석조건”을 “보석조건 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건(이하 “보석조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3제3항 중 “보석조건”을 “보석조건등의”로 한다.

제31조의4의 제목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를 “(보석조건등의 이행 상황 등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석조건”을 “보석조건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석조건”을 “보석조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소송법」 제102조”를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으로, “보석을”을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로 한다.

제31조의5의 제목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를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보석이”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형사소송법」 제102조”를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속집행정지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피고인의 수신자료를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보석이 허가된 사건 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의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석이 허가된 사건 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의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16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조의2(벌칙) ①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제31조의5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 부착 집행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속집행정지조건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자장치 보석조건등 피고인의 수신자료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의5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 피고인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 ② (생략) ③ 보호관찰관은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교도소장등에게 요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교육, 제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제1 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u>피부착자의</u>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u>피부착자</u> 를 면접할 수 있 다. 이 경우 교도소장등은 보호 관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u>보석과 전자장치 부착</u>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피부착명령자</u> ----- ----- ----- ---- <u>피부착명령자</u> ----- -- . ----- ----- 제5장 <u>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와 전자장치 부착</u>
제31조의2(<u>보석과 전자장치 부착</u>)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 8조제9호에 따른 <u>보석조건</u> 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의2(<u>보석 또는 구속집행정 지와 전자장치 부착</u>) ① ----- ----- <u>보석조건 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구속 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건</u>

② ~ ④ (생략) 제31조의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 ② (생략)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u>보석조건</u>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1조의4(<u>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u>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u>보석조건</u>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이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주거의 제한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u>보석조건</u>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u>보석조건등</u>”이라 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보석조건등의</u>-----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4(<u>보석조건등의 이행 상황 등</u> 통지) ① ----- ----- ----<u>보석조건등의</u>----- ----- -----. ② ----- ----- ----- ----- ----- ----- ----<u>보석조건등</u>----- ----- ----- --.
--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생략)

2. 보석이 취소된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신설>

<신설>

③ -----
-----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가-----

3.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4. 구속집행정지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피고인의 수신자료를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보석이 허가된 사건 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의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석이 허가된 사건 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의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u><신 설></u>	<u>제7항 및 제16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u> <u>제38조의2(벌칙) ①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제31조의5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 부착 집행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	---